

- 삼척시 상수도 관망 정밀기술진단용역 - 사업수행능력평가(PQ) 관련 질의 답변

○ 질의사항 및 검토결과

■ 질의사항 :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관련 질의

-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[별표 2]

자격요건	인원	회사명	
		○○	○○
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	1	강○○	강○○

-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자격요건 중 상기 항목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에 상하수도기술사 또는 산업기계 설비기술사 모두 인정되는지 확인요청

■ 답변사항

- 본 용역은 「수도법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용역으로,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(기술인력을 갖춘 자)에게 대행할 수 있는 용역사업입니다.
-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기술진단을 통한 평가 및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는 용역으로,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8] 및 [별표 11의2], “삼척시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2-26호” 3-나 항목에 따라 산업기계 설비기술사는 상하수도가 포함된 중직무분야 토목과 유사 직무분야로 인정되는 기계분야로서 기술사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단, 유사 직무분야라고 하더라도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 모순이 있는 자격은 검토 후 제외 처리 예정입니다. (예: 전기·전자분야 중 의공기사, 환경·에너지 분야 중 기상예보기술사 등)